

산학협력정책위원회 규정

(제정 2018. 3. 21.)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산학협력의 발전 방향과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·평가·개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산학협력정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대학의 산학협력기본정책에 관한 사항
2. 대학의 산학협력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
3. 대학의 주요 산학협력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
4. 대학의 산학협력주체간 협력 및 사업 조정
5. 그 밖에 대학의 산학협력 발전방향에 관한 주요사항

제2장 조직 및 운영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총장이 위촉한다.

② 위원장은 부총장이 되며, 부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된다. <개정 2019.1.1.>

③ 교육혁신본부장, 기획처장, 교무처장, LINC3.0사업단장, 창업지원단장, 농생명융합기술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,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며 필요 시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. <개정 2022.3.29.>

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하며,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⑤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, 간사는 산학협력지원실장, LINC3.0사업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. <개정 2022.3.29., 2023.3.29.>

제4조(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.

②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한다.

④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을 맡는다.

제5조(회의)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,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,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(회의록)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
②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3인 이상이 서명·날인하여야 한다.

제7조(의견청취) 위원회는 위원이 아닌 자의 참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8조(관계부서의 협조)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(보고서)제출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

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, 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제3장 업무

제9조(산학협력중장기발전계획 수립) ① 산학협력중장기발전계획은 10년에 1회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위원장은 산학협력중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그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. 다만,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발전계획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.

② 위원장은 내·외부여건분석을 실시하여 도출한 내용을 토대로 산학협력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며, 구성원이 숙지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명시한다.

③ 산학협력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학내·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.

④ 산학협력중장기발전계획은 교무위원회의 자문, 대학구성원 공청회 및 대학평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공포한다.

제10조(예산편성) ① 산학협력중장기발전계획에는 전략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편성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.

② 전략과제를 수행하는 부서에서는 전략과제 항목별 예산사용에 대한 근거자료를 보관하고, 성과평가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1조(산학협력발전계획 평가 및 개선) ① 산학협력중장기발전계획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매년 1회 자체평가를 실시한다.

② 자체평가를 통해 도출된 보완 및 개선사항은 전 구성원에게 공지하고 해당부서는 차년도 산학협력중장기발전계획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12조(보고)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1. 산학협력중장기발전계획에 관한 사항
2. 산학협력중장기발전계획 추진상황 점검 및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5장 보칙

제13조(세부사항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2.3.29.>

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3.3.29.>

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